

# 사법감시

제2호

1995년 12월 11일

Justice Watch Newsletter

발행인 : 김중배

편집인 : 박은정

편집위원 : 박경자, 박원순, 안경환, 차병직, 한인섭

제 호 : 신영복

## 목 차

창간호를 읽고 / 2

사법감시 초집 / 4

검찰, 더이상 은폐·축소 수사는 안된다.

사법감시 25시 / 6

6공 정권의 부정부리 수사에 대한 검찰의 범인은닉 및 직무유기 고발장  
특집 / 8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

-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 나타난 반법치적 성격

단평 I / 12

뇌물기업주 이례적 징역형

사법감시 통신문 / 13

90만원과 100만원, 그 10만원의 정치적 고려에 대하여

참여연대 대안 / 1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평 II / 15

전관예우 논란

모니터 리포트 / 16

사무장의 눈으로 본 사법현실

-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 대한 설문조사

판결읽기 / 19

단체협약상의 인사(해고)조항의 형해화

단평 III / 20

외뿔말 심복행 공소기각 석방 논란

해외통신 / 21

한국에서라면 사형?

- 한국의 형사사법현실과 관련하여 다시 본 O.J. 심슨 재판

사법감시 만평 / 23

시민발언대 / 24

내가 겪은 법의 현실

단평 IV / 25

5·18 위증도 '공소권 없음'

이것만은 고치자 / 26

법정에서의 법관의 말투

나의 사법피해 사례 / 27

무죄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나의 사법피해

##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

8

95년 4월 총선에서 직접 유세등 선거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등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 중 반법치적 성격을 지닌 것을 선별, 평가하였다. 통치자가 아닌 국민의 대리자인 대통령의 반법치적 발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

6공비자금 사건이 터진 후 범죄자에 대한 예우에 국민들이 심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예우박탈 뿐 아니라 현행 법률은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에 전후하여 범위와 내용이 지나치게 강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통치사료'에 대한 국가소유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사무장의 눈으로 본 사법현실

16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역할은 변호사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들 사무장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무장의 72%가 급행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으며 62%는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낸다는 응답이 나왔다.

## 한국에서라면 사형?

21

한국인의 눈으로 본 O.J. 심슨 재판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이다. 고교 미졸업자가 배심원이 되고 재판이 텔레비전에 중계되는 나라, 그리고 구속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위가 아니라 양복을 입은 나라에서 진행된 재판을 버클리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조국 선생이 직접 이야기 한다.

## 내가 겪은 법의 현실

24

지난해 10월 6일 '북한 장학금 교수' 사건으로 안기부에 연행되어 이복을 감중받았던 정현백 교수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털어놓는다.

## 기성언론의 침묵과 타성을 깨길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김병교]

최근 노태우씨의 거액 부정 축재 사건으로 온나라가 발집을 쏜서 놓은 듯 발각 뒤집혀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공분에 앞서 국민들의 최고 공복인 대통령, 그것도 두명씩이나 연거푸 수천억원의 검은 돈을 거둬들이고 친인척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같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동안 우리의 언론이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직필정론(直筆正論)을 펴왔으며, 사법기관 역시 범법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추상같은 단죄를 해왔는지, 우리들의 제도 자체에 부패를 부추키는 요인은 없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른바 '백'과 '연줄'에 익숙한 국민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부패를 잉태하고 조장하는 온상이 아닌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노씨의 부정수뢰사건도 단순한 개인차원의 비리사건 내지 일시적인 감정의 분출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가 혼란스럽고 사회기강이 흔들려도 법원·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 내지 준사법기관의 양심이

살아있고 지기추상(持氣秋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결국 국법과 사회질서가 바로 서고 정의도 실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기관의 역할은 지극히 중요하며, 이들이 국민주권의 충실한 행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사법감시」를 비롯한 언론매체와 일반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사와 건설적인 비판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다만,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존재함에도 사법기관의 감시를 위하여 또다른 형태의 매체가 등장한 데 대하여는 우리 언론의 현주소 즉 무소신과 굴신, 무기력, 사실왜곡 등으로 점철된 직무유기를 보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사실에 입각한 엄정한 비판을 기대하며 아무쪼록 사법감시가 기성언론의 침묵과 타성 보도 등으로 가리워진 사법기관의 비리와 직권남용 등을 들춰내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사법기관의 민주화를 앞당김과 아울러 사법기관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고의 봉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 실명화가 주는 신선함

[관악구 봉천동 이 형]

「사법감시」 창간호를 읽고 무엇보다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건과 판결에 관련된 판사, 검사들의 실명이 그대로 쓰여있는 것이었다.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대단히 켄끄럽겠지만, 공직자로서 자신이 내린 판단에 책임지도록 하고 아울러 사

민들이 사법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검찰과 법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게 하고, 사법개혁이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법감시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런 공격 감시의 영역을 확고히 개척해야만 이름

이 거론된 판사, 검사도 그것을 단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

## 사법감시에서 사법참여로

[관악구 신림동 한상훈]

법관은 고매한 인격자도 완벽한 성자도 아닌 다만 한 사람의 법률전문가라고 하는 '법관에 대한 탈신비화'는 최근해야 가능했으며 이러한 탈신비화야말로 사법감시의 이론적, 정

서적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인 사법민주화의 첫걸음은 사법, 즉 법관·검사·경찰 등의 적법절차 준수여부의 감시이지만 사법감시가 사법민주화의 종착역은 아니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사법참여'가 되어야 한다. 건전한 양식과 교양을 갖춘 국민이 스스로 사법과정에 참여하여 법의 실현에 하나의 주체가 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사법민주화와 사법부의 신뢰는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사법감시」 창간호의 5.18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내용과 LG해고노동자 법정구속사건에 대한 항의 내용은 무척이나 시의 적절했으며 시민발언대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법감시」가 열린 공간임을 실감하게 한다.

사법참여로의 먼길에 참여연대와 「사법감시」가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

「사법감시」 창간호는 전국의 판사(600명), 검사(850명), 법학교수(670명), 변호사(250명)와 국회의원, 법무부, 사회단체, 일반시민 등에게 5천여부가 배포되었다.

첫출발을 한 「사법감시」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누구나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반성하지는 하지만 지난 창간호의 「目不見의 검찰,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라는 글의 제목은 표현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한 현직검사의 정중한 항의성 전화와 몇 현직 판사들로부터의 '편협한 시각'이라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 밖에도 전문인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다루었을 뿐 사법부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밝혀내기에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과 사실 분석보다는 논평류의 글이 많아서 취재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사법감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을 기울여 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구독신청을 기다립니다.

「사법감시」의 구독료는 연 2만원입니다.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 문혜진

국민은행 015-21-0808-184

제일은행 325-20-123107

상업은행 192-08-324269

농협 094-02-09285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하이텔/천리안/나우콤 : PSPD

##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노** 태우씨는 군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사업에서도 돈을 챙겨 결국 국군의 전력을 약화시켰다. 극형을 면치 못할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문제는 문민검찰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데 있다. 특히 검찰은 93년 동화은행장 비자금사건과 6공 비자금 내사시에도 알만큼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덮어 버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그것 뿐이 아니다.

서석재씨가 사천역원 비자금설을 누설하였을 때 국민들은 모두가 마른침을 삼키며 검찰에 기대를 걸어 보았다.

### 검찰의 직무유기

그러나 그것마저 어정쩡한 변명으로 물어버렸고 이에 적반하장격으로 노태우씨 측에서는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올려매었다. 그러다가 명백한 증거를 찾아 제시하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만일 이 사건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더라면 노태우씨 측에서 오히려 고소를 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검찰은 산바람을 날리며 애매한 몇 사람을 징역 보냈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권력과 재벌에 니약한 모습을 드러내왔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고소사건을 묵살하였으며 5.18 광주민중항쟁 사건도 얼버무려버렸고 이원조씨를 나라밖으로 피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노태우씨 사건에 있어서는 가·차명 계좌를 덮어 버렸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 개인의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는 또 어떠한가. 그것마저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일이 많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원성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 핑퐁수사?

수사하면 독 소리가 나게 명백한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청탁만 들어가면 핑퐁수사(검찰이 피의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피의자를 봐 주기 위하여 사법처리를 기피하는 방법 중에 한가지로 서로 다른 검찰청끼리 사건을 이송시켰다가 다시 받고 또 이송시켰다 다시 받고 하여 마치 탁구공이 왔다갔다하는 하는 것과 같이 처리하는 방법)를 하면서 이력저력 세월을 보내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다가 사건을 호지부지시키던가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무 죄가 없는 사람도 상대방이 돈과 권력에 의한 청탁을 하면 기소독점주의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독점권력을 악용하여 마음대로 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른바 '청탁수사'라는 것이다. 그렇게 당하는 피해자는 천신만고 끝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오더라도 그때는 이미 걸레쪽처럼 훼손된 명예와, 변호사비용 등으로 날려버린 재산과, 파괴된 가정과, 정신적인 상처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게 된다.

### 우리에게 검찰은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문민정부 들어서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검찰 자체의 통계에만 따르더라도 93년 한 해에 천명이 넘는단다. 문민정부하에 한해에 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검찰에 의해 죄가 있다고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억울한 사연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숫자도 변호사를 잘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법원에 충분히 반영시킨 행운아들만의 숫자일터이다.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어 자신의 누명을 벗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영원히 죄를 뒤집어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검찰이란 존재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고소장을 써 들고 검찰을 찾아갔던 사람이나 반대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청 문턱을 단 한 번만이라도 넘나들어 본 사람

이 있다면 검찰에 큰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협박조의 연사가 난무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본다. 검찰이 범죄자를 다루다 어쩔수 없는 일도 있겠으나 국민이 주권자이고 무죄추정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다. 검찰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 검찰이라는 사람도 있다. 조그마한 사업체라도 하나 꾸려나가려면 검사 한명쯤 알고 지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 검찰은 다시태어나야

필자가 아는 사람이 자신은 아주 많은 죄를 범하여서 관례대로 라면 구속을 면할 수 없는 경합범죄자였는데도 검찰에 로비를 하였더니 불구속 기소를 해주더라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는 모해 위증(10년이하 징역), 무고(10년이하 징역), 10억원 사기미수(10년이하 징역), 등 세 가지 경합범죄로 서울지법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소된 후 1년이 넘도록 검찰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이렇다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재판을 질질 끌어주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로비를 받아들여 자신을 봐 주었던 검찰을 가리켜 하는 말이 "검찰은 위로는 정치인들의 썩은 물에 물들고 아래로는 항상 도둑놈 사기꾼만 다루다 보니 검찰 자신들이 더 썩어 버렸다."라고 오히려 악평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람에겐 기본 양심이 있는데 자신을 봐 주었다고 하여 무조건 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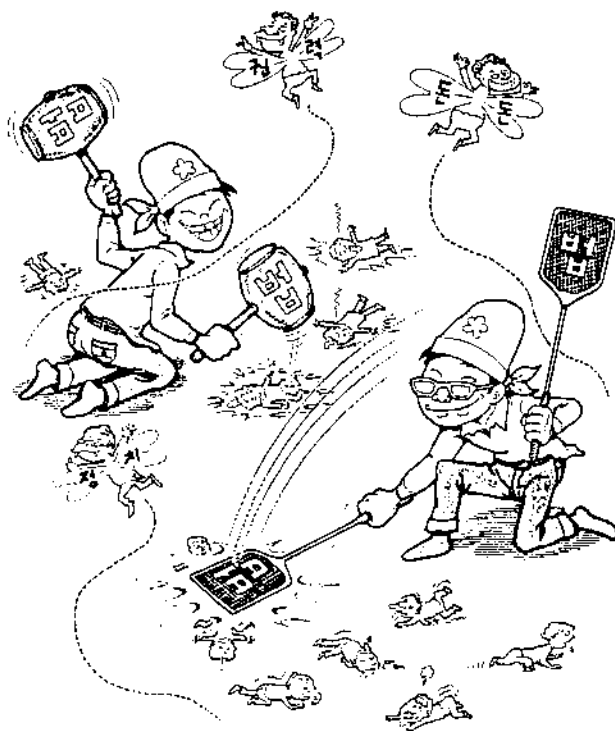
행위를 적법행위로야 보겠는가. 비겁한 부정행위는 영원히 감추어질 수 없고 그 부정행위에 의해 편의를 보았던 자들은 영원히 입을 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태우씨만큼이나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다.

노태우씨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은 수사하는 입장이 아니라 범죄자가 범죄사실을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할 수 없이 하나씩 자백해 나가는 것처럼 해 왔던 것이다. 그렇게도 검찰이 기피하던 이원조씨의 수사에 대해서도 노태우씨의 영장을 발급한 서울지법 김정호 판사가 수사기록에 있는 이원조씨의 혐의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자 어쩔 수 없이 이원조씨 수사의 불가피성을 시인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검찰은 혐의사실을 말한 김정호 판사를 향하여 규정이나 관례에 어긋난다면서 불평을 하

었다고 한다. 규정이나 관례를 들먹이자면 우리 검찰이 먼저 문제이다. 검찰은 엄연히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시도 때도 없이 범하고 있으면서 정작 김정호 판사가 온 국민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 것을 큰일이나 저지른 양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검찰은 스스로 권력과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사법정의를 실현시키는데 매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만일 검찰이 권력의 비리와 부패에 용감하고, 그러기 위해 검찰 자신을 정화시키는 일을 포기하고, 계속하여 권력과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유명준]



참여연대는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 조성·사용한 6공 정권의 부정비리를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여 범인을 은닉하고 직무를 유기한 검찰 관련자들을 지난 10월 2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다음과 같이 고발하였다.

##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범인은닉 및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피고발인

박종철 전 검찰총장

김도연 전 검찰총장

송중의 전 대검차장

김영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이원성 전 대검 중수부장

### 1. 고발취지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검찰권 역시 최종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 조항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즉,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는 국민의 뜻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의 의사에 반한 검찰권의 행사는 그 존립근거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선택하여 검찰에 기소권을 독점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 법령이 그러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그 예우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마땅히 이러한 법령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도 엄정한 검찰권을 추상과 같이 행사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의와 부패를 처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검찰은 이러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여 정치권

력과 결연하여 엄정한 검찰권을 세우는 커녕 정치권력의 의지에 복속시키고 말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수없이 열거할 수 있을 터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 이르러 그 극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94년의 정치자금 내사,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 4천억 비자금 발설경위 수사에서 검찰은 이미 불법적 비자금의 실체를 알려주는 계좌를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박계동 의원에 의해 비자금의 실체가 폭로되어서야 마지못해 방산의 일각이나마 밝혀지게 되었으나 아직 검찰의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는 검찰이 부정과 부패를 발본하는 중추이기는커녕 부정과 부패의 장본인들을 보호하는 집단이 되어버린 모습에 참으로 분노와 절망의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무를 방기하고, 비자금의 실체를 은폐함으로써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범법자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한 피고발인들을 고발함으로써, 차후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당한 검찰권의 정립과 공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2. 범죄 사실

(1)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및 범인은닉

1993년 당시 동화은행장 안영모 씨의 커미션 수수비리 사건으로 시작하여 정치권의 뇌물조성 문제로까지 확대, 김종인 의원이 구속되고 이용만 전 재무장관이 기소중지된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 당시 담당검사였던 함승희 변호사는 비자금 관련 계좌를 찾아내서 물증을 확보하였지만 검찰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하여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에 오른 이원조, 이용만, 김종인 씨에 대한 수리혐의를 동화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으로 확대하려 하자 4월 28일 박종철 당시 검찰총장은 “동화은행 이외의 내사나 수사중인 은행은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밝혔으며, 김영수 청와대 민정수석도 같은 말을 했다. 그 후 이원조, 이용만씨의 출국방치 의혹 속에 김도연 대검차장은 “물증이 없어 소환이 어렵다”고 밝혔고, 김영수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이날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박계동 의원은 1993년 10월 19일 제177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수 씨의 비자금 은폐 지시와 송중의 서울지검장의

압력으로 비자금 실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형법 제122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발인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죄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검찰권 행사의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함으로써 직무유기의 범죄를 행하였을 뿐 아니라 노태우, 이현우, 이원조, 이용만 등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범인은닉, 도피케하여 형법 제151조 1항의 범인은닉죄를 범하였다.

(2) 1994년 정치자금 내사와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및 범인은닉

대검 중수부는 1994년 2~5월 노태우 전대통령의 6공 비자금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동화은행사건 수사당시의 단서를 토대로 본격 내사작업을 거쳐 재벌기업의 비자금에서 이현우씨가 관라하던 청와대 정치자금 계좌로 거액이 드나든 흔적을 발견했으며, 이를 근거로 재벌기업의 경영진 30여명을 국비리에 소환조사하여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조선일보 1995년 10월 23일자)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1994년 비자금 내사를 통해서 피고발인들은 수백억원대 가·차명계좌 보유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도 내사사실 자체를 전면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함으로써 당시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1994년 2~5월 검찰의 수뇌부인 피고발인 당시 김도연 검찰총장, 송중의 대검차장은 직무유기 및 범

인은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3) 1995년 8월 서석재 장관 발언에 대한 해명수사와 관련한 직무유기

지난 95년 8월의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전직 대통령 4천억 비자금설"에 대해서 해명성 수사로 일관한 검찰은 시정의 소문에 불과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당시 이원성 대검 중수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나가리"라며 서석재 장관의 폭로내용을 해프닝으로 몰았다.

서석재 전 장관은 박계동 의원처럼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여권의 핵심인사로서 최초로 비자금 의혹을 언급한 점에서 주목의 가치가 있었으며,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검찰의 입장에서 이를 단순한 일과성 해프닝으로 결론지은 것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조성에 대한 은폐 및 검찰권 행사를 방기한 직무유기라 하겠다.

### 3. 결론

"성역 없는 사정"은 문민정부 초기의 대표적 구호였다. 그러나, 우리는 성역 없는 사정이 문자 그대로 구호로만 그쳐 왔던 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성역에 대한 비호가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상납, 무기도입을 둘러싼 커미션, 중시부양책, 각종 인허가 사업에 대한 반대급부 등으로 조성된 수천억에 이른다는 비자금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고발인들은 분노의 심정을 넘어서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벌어진 수많은 부정과 비리를 국민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으며 불행히도 그 짐작이



틀린 경험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에 의해 출범된 이른바 문민정부 하에서도 검찰권의 엄정한 행사는 난망하였으며, 박계동 의원의 물증제시에 의해 떠밀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비자금 사건 수사에 대해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독립되고 공정한 검찰의 존재 없이는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영원히 추방되기 어렵다고 본다. 추상같은 검찰권의 존재야말로 부정과 부패를 막는 방파제요, 사회정의를 담보하는 망루이다. 오늘날 정치권력과 거대자본에 예속된 검찰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회정의의 실종과 국민들의 정의감의 붕괴를 잃고 있다. 독립된 검찰권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시대 민주화와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고발인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의 의무를 방기하고 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은폐에 급급함으로써 검찰권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하는 바이며, 본 고발건의 뿌리가 된 6공 비자금 실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빚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본 고발건의 처리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특집

##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

·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 나타난 반법치적 성격

**대**통령은 전근대의 왕처럼 국민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자가 결코 아니다. 그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그의 권한도 이런 책무의 수행을 위해 선거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을 뿐이다.

### 대통령은 왕인가?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합법적인 왕'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그가 행한 발언,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그의 언행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태도를 볼 때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가부장적'이며 '문민독재'라고 비판받는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상당부분 그의 개성에 기인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실정법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김 대통령은 그런 '반법치적' 발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6개월간의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을 일간신문을 기초자료로 하여 조사하고 그 반법치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런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더라도 그냥 넘어갔던 대통령 발언의 반법치성을 드러냄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의 바른 자세, 그리고 법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법치주의는 삼권분립에 따른 민주적 조직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에 의해 제정된 법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말하며, '피치자의 동의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대통령 발언의 반법치성에 관한 지금부터의 논의는 이러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하도록 하겠다.

김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 선거공천배제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공관 점거사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책임있는 사람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태도가 무엇이나. 뭇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길거리를 다니느냐"고 질타했었다.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황의 장을 겨냥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동아일보 95. 3. 21.)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직책으로서, 국회의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국회법 제10조 · 15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면, 국회에서 선출되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국회의장을 대통령이 질책하였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반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아니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권력분립론은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개의 다른 작용으로 나누어서 각 작용을 각기 다른 구성을 가진 독립기관에 담당케 하여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관리로서 로크(J. Locke)에 의해 주장된 후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의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우리 헌법은 현대의 여러 정치체제 가운데서도 더욱 삼권분립에 충실한 대통령중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삼권분립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국회의장을 질책함으로써 그 의정활동 수행에 개입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야당의 의장 공판 점거사태가 여당의 법안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할 때, 파행적 국회운영을 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의 발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편법을 조장하는 반법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대통령의 총선거원 의지

김 대통령은 또 "내년의 15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는 민자당 총재로서 당후보들을 위해 직접 유세 등 선거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조선일보 95. 4. 27)

아마도 이 글에 나온 김대통령의 여러 발언 중에서도 매스컴에 의해 그 반법치성이 가장 뚜렷하게 지적된 발언일 것이다. 여야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 93년말 개정했던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1항에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이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현행법상 대통령은 선거지원 유세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의 발언은 현행법에 대한 무지의 결과에서 나온 반법치적 발언으로서, 이후 여론에서조차도 여론의 반발을 염려한 나머지 선거지원유세에 대해 법률개정이후에 가능한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3일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깨끗하게 치러 선거혁명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은 6개월 안에 자격을 박탈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95. 5. 13.)

위의 발언은 부정선거를 척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동기가 어디에 있든간에 법의 규정에 바탕을 둔 발언이 아니면 반법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발언 역시 반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223조에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 혹은 당선외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225조에선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에 의해 당선된 사람을 자격박탈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은 오직 위의 통합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을 제기하고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며, 부정선거의 여부도 재판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것이다. 그런데 김 대통령은 사법부의 권한과 직무영역에 속하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자기 임의로 부정당선자를 가려내고 자격 박탈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이 또한 명백한 삼권분립주의의 부정인 반법치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개월 안에'가 제225조의 '180일 이내에 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면, 그나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음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일일까?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통신노조가 작년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는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파업관계자들을 전원 의법조치하고 통신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강경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95. 5. 20.)

‘파업을 강행할 경우’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점에서 한국통신(이하 한통)노조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파업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노동법 어디에도 파업을 준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대목은 없다. 또 피고용자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정책에 관여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공기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전혀 금지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적 기업운영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통노조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지은 김 대통령의 발언은 ‘법’이란 말을 선불리 끌어쓴 데서 비롯된 반법치적인 것이라 하겠다.

### 대통령의 제3자 개입

더욱이 김 대통령은 한통노조의 행위에 ‘국가전복의 의의가 있다’고 규정지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전복’이라는 말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한통노조가 반국가 세력과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은연중 내비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전복’을 운운한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와 회사, 그리고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주어 쟁의문제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노동쟁의의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노동쟁의 조정법 제13조 2항에 규정된 ‘제3자 개입금지’에 반하는 것이며, 이런 면에서도 그의 한통노조파업 관련 발언은 반법치적인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이번에 북한에 무상지원키로 한 15만 톤 외에 앞으로 더 줄 예정”이라면서 “우리가 가진 쌀이 없으면 외국에서 사서라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6·25 전쟁 45주년을 앞두고 당시의 중군 연예인 1백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대단히 나쁘다”며 그같이 밝히고 “외국 쌀 값은 우리의 3분의 1이며 우리가 그런 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95. 6. 23.)

외국 쌀값이 3분의1이든 10분의1이든 간에 그에 드는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여 마련된 국가재정을 대통령 개인이 씹짓돈 쓰듯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며,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출엔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 헌법 제56조는 “정부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쌀을 사는 돈이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외국 쌀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김 대통령의 독단으로부터 나온 반법치적 발언임에 틀림없다.

### “쌀 사서라도 주겠다.”

물론 쌀 구입비를 예비비 등 용도미정의 예산항목에서 충당할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돈을 갖고 있다’는 발언은 그러한 근거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그의 발언이 진지한 법적 고려가 결여된 인기성 발언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발언에 국민들의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점은 명백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민자당 의원들에게 삼동백화점 붕괴참사에 대해 언급, “이것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행 법률로는 안되므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국민일보 95. 7. 5.)

만일 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에게 불안감과 법에 대한 불신감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어떠한 법이든 시행기간 중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기간 이후에 생긴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곧 삼동사고의 책임자들을 살인죄로

다스릴 수 있도록 소급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명한 반법치적 발언이다. 또한 사법부의 고유영역인 범죄의 관정에 대해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단정한 데서도 반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

물론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장사에 눈이 어두워 대규모의 인재를 부른 삼풍사고의 책임자들을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여론이었으며, 김 대통령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란 기분에 따라 아무 발언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그 영향력을 생각할 때 발언에 앞서 마땅히 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었어야 했음에도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김 대통령의 독단과 범람에 대한 무지의 또다른 증거가 될 것이다.

민자당은 대통령의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90일 전까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토록 돼있는 현행 당규를 개정, '1년 전부터'를 삭제하고 '90일 전까지' 선출하면 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당규개정은 또한 민자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 국정전반을 확실한 자기책임 아래 운영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후반기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차기 대통령후보 선출시기의 시발점 규정을 없애는 등의 당헌당규개정은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동아일보 95. 8. 19.)

헌법 제8조 2항에서는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여 정당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이며 대의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당정치의 성공 여부는 곧 민주정치의 성공여부와 직결되는 것이다. 곧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정당정치 하에서 국회의원의 행동이 그 자신의 결정보다 정당의 결정에 구속받는 현상도 정당 내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민주적으로 함으로써 민주이념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 청와대 법원, 김영삼 판사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이번 당헌당규 개



정안은 강력한 총재친정체제 확립이 주요내용으로, 그 내용이 비민주적임은 물론, 개정의 절차도 민주적 절차와는 거리가 먼 상명하달식이었다.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체질을 갖춘 건강한 정당들의 존재는 바로 정치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아무리 정치는 현실이고 선거에서의 승리가 절대절명이라 해도 권위주의적 1인 지배정당으로 후퇴한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당의 민주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아닌 당의 총재로서도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적이고 법치적인 정당정치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지시를 내린 것은 반법치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만나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편했던 관계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회장에게 '이제는 딴 생각을 하지말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아일보 95. 8. 20.)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행위를 선택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권의 하나이며, 이러한 자유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정주영씨와의 면담에서 '딴 생각을 하지말고 경제에 전념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

의 영향력에 비추어볼 때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으로 볼 수 있다. 또 '판 생각'이라는 것이 '하라는 경제는 하지 않고 쓸데없이 정치에 뛰어돌려는 생각'이란 의미로 쓰였던 점에서 참정권마저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재벌의 정치참여와 정경유착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행태를 보인 정주영씨이지만, 문민정부 성립후 현대에 대한 경제제재와 대통령의 발언은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먼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 남긴 몇가지 발언을 분석하여 거기에 나타난 반법치성을 밝혀내고 비판하여 보았다. 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독선적 사고방식,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얼마나 많은 반법치적 발언을 행하여 왔는지를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발언들이 대개의 경우 정당한 비판없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런 비민주적 사고방식, 무비판적 수용자세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한다.

### ‘통치’에서 ‘법치’로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흔히 통치권이니, 통치권자니 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또 그런 표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다. 또 이때 사용되는 ‘통치’란 말은 법의 논리를 초월한 정치의 독자적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 노태우 대통령도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에 대해 해명하면서, ‘통치자금’이라는 법률용어사전에도 없는 용어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한 발언은 한 개인이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이 ‘통치’라는 말에 치외법성을 용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 대통령의 반법치적 발언이 많은 것도 바로 그런 의식이 대통령 자신에 영향을 미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가 통치자가 아닌, 법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자임을 깊이 깨닫는 일일 것이다. 국민들 역시 더이상 정치를 법 이외의 어떤 것으로 보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겠다. 법이 제자리를 찾을 때 진정한 민주정치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정리 : 정육도 서울법대 사법감시단]

단명!

### 뇌물기업주 이례적 징역형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0월 6일 전 노동부 장관 이형구씨에 대한 중죄혐의로 기소된 성신양회, 조선맥주등 12개 대기업 대표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중재)죄를 적용, 검찰구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1-2천만원 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12개 대기업 대표들은 지난 91년 3월부터 93년 6월 사이 당시 산업은행 총재이던 이형구 전 노동부장관에게 2천만-5천5백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당초 벌금 1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뇌물액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원의 직권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이 은행대출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기업주를 검찰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집행이 유예되기는 했으나 뇌물공여자에 대해서 가벼운 처벌을 해온 재판관행을 깬 이례적인 일로서, 사회지도층의 뇌물관행에 대한 경종과 함께 부패척결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선고에 앞서 전봉진 부장판사는 ‘사회지도층의 경우 생존을 위해 서러가 보다는 치부와 영달을 위해 거액의 뇌물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부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재계인사들은 뇌물을 주지 않아도 기업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법정형에 비하면 기업주들에 대한 형벌이 그리 무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동안 뇌물공여자에 대한 재판관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으며, 노태우씨에게 천문화적인 규모의 뇌물을 공여한 재벌기업대표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이번 판결의 정신이 바르게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90만원과 100만원, 그 10만원의 '정치적 고려'에 대하여

-이해선 부천시장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부천기독교연합회소속 목사들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선 부천시장, 김길홍, 이창식, 이호성씨에 대해 내려진 10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홍일표 부장판사)의 판결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먼저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 엄중히 집행되어야 할 통합선거법 적용이 이 판결로 말미암아 흐트리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200만원의 기부금을 줌으로써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어떤 수단에 의해 서도 일단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과거의 의식과 관행을 척결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어 있는 현 통합선거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해선 부천시장에게 선고한 90만원은 정말로 낮간지러운 선고형량이 아닐 수 없다. 100만원이면 100만원이고, 50만원이면 50만원이지 90만원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이해선 부천시장을 봐주기 위한 양형임을 알게 해 준다. 10만원의 차이가 바로 부천시장의 직위가 걸린 문제이라는 점에서 보면 결코 적은 양형의 차이가 아니다. 그 10만원이야말로 통합선거법의 엄정한 집행을 포기하게 하고 사법부의 결연한 공명선거의 의지를 실증케 한 문제의 액수가 아닐 수 없다. 그 액수는 비록 10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이해선 시장을 구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치적 고려'임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마땅히 이러한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맞는 엄정한 양형을 선택하여 아무리 투표에 의해 당선된 현직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직위를 내놓도록 함으로써 추상같은 사법권과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지켜야 했던 것이다.

또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이번 판결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기부액수보다 행위양태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지만 우선 외형적인 기

부액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양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태양과 동시에 그 범죄의 규모와 피해액수를 고려한다는 것은 하나의 전전한 상식이다. 더 나아가 재판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돈을 준 것에는 다름이 없지 않는가. 이해선 시장의 기부는 강요에 의한 행위란 것인가. 돈을 갖다준 것이냐 아니면 받으러 온 사람에게 주었느냐는 행위 양태보다는 준 금액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다. 특히 이창식 후보가 준 것이 30만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YMCA 광고게재료 등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데, 이창식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200만원을 준 이해선 시장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법 앞의 평등이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선거법이 당선된 사람에게나 낙선된 사람에게나 다함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무소속 후보이든 정당 소속이든 모든 후보가 달리 취급받아서 안된다. 그런데 낙선하고 무소속이었던 이창식 후보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시장에 당선된 이해선 후보를 구제해 주었다는 안상을 이 판결을 통하여 받게 된다. 이창식 후보는 그 당시 부천시의 수많은 시민단체의 추천에 의해 입후보하게 된 이른바 '시민후보'였고 그 후 깨끗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 많은 언론의 보도에도 확인되었던 사람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사법정의를 거꾸로 세운 것이라고 밖에 따로 볼 도리가 없다. 우리는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정의에 맞지 않는 이같은 비합리적인 판결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통합선거법의 정신이 이 판결로 무너지서는 안된다는 간곡한 마음에서 이 판결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가하는 바이다.

1995년 10월 10일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현재 범죄자에 대한 예우박탈의 문제를 중심으로 개정이 거론되고 있으나 '통치사료(문서)'를 국가소유화하는 것에 더욱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 개정 취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한 시대의 국가를 대표한 원로로서 그에 상응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1969년 1월 22일 법률 제 2086호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비극적인 정치사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쿠데타와 무력에 의해 장악하거나 부정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이러한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대통령이 되거나 취임 이후에 엄청난 규모의 인권유린이나 부패를 함으로써 국민이 존경하거나 예우를 해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도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거나 국민의 존경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감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제5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퇴임하기 직전후였던 1981.3.2 및 1988.2.24 두차례에 걸쳐 예우의 범위와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였던 법률로서 그 예우의 내용이 지나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우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과 존엄성을 지키는 정도로 할 필요가 높다.

한편 그 동안 전직 대통령 가운데 재직 기간동안 작성되거나 소지하게 된 이른바 '통치사료'를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면서 이른바 '폭탄발언' 또는 '협박용'이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숨김없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에 쌓여진 문서나 물건은 그 시

대의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의 배경과 과정을 알게 해주는 자료로서 제대로 보존, 관리되다가 일정한 시기에 해제되어 공개됨으로써 학자들에 의해 연구의 자료가 되고 후세대의 귀감과 교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한 개인이 가져 나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다가 결국 산일되어 버린다면 국가의 큰 손실이고 야만적인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 조선 시대 왕의 모든 행동과 발언을 모두 기재한 사관이 왕의 간섭과 가감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왕의 사후에 실록을 만들어 후세가 보고 그로부터 그 시대를 알게 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금의 우리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보존법(The Presidential Records Act)을 참조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의 직무상의 문서와 물건을 모두 전직 대통령기념도서관으로 이관시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하였다.

## 2. 개정안의 요지

(1)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러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만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직 대통령이 그 재직기간중 또는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의 직무상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일정한 형량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때에는 적용을 배제함(제3조 제2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의 범죄행위란 쿠데타들의 범죄행위 또는 선거법상의 범죄행위 등을 말하는 것이고 재직중의 범죄행위란 재직중 각종 부정부패 등에 관여되는 등의 범죄행위를 말함

(2) 지금의 연금지급액은 100분의 95에 이르러 현직대통령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그 지급액을 100분의 30정도로 낮추고(제4조 제2항)대체 지급대상자인 유족들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함(제5조 제1항)

(3) 전직 대통령이 재직 기간 중 직무상 작성되거나 소지하게 된 일체의 문서와 물건 등 자료를 개인이 취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 모든 자료를 국가소유로 이관하고 동시에 그 대통령기념도서관에 보관하도록 함. 이 운영의 주체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하되 그 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출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조의 2).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취거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둠(제10조)

(4) 연금지급 외의 예우도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비서관의 숫자와 지위의 축소, 격하를 도모함(제6조)

### 3. 개정안 전문

(1) 제 3조(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이 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그 전직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또는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의 직무상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한다.

(2) 제 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30 상당액으로 한다.”

(3) 제 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 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 연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4) 제 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전직 대통령이 그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보고 등에 의하여 소지하게 된 일체의 문서와 디스켓, 기타 물건은 전직 대통령 자신과 그 가족과 유족, 직원 등 그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취거할 수 없다.

② 위 문서와 물건은 모두 총무처장관의 관장하여 전직 대통령기념도서관으로 자동적으로 이관하며 국가의 소유가 된다.

③ 그 기념 도서관은 각 대통령마다 별도로 설립하고 운영의 주체는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하되 그 재원은 국가에서 출연한다.

④ 그 기념도서관의 운영, 직원, 문서와 물건의 보존, 분류와 해제, 공개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 6조(기타 예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2인을 둔다.

② 제 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 3항은 그대로 둔다.

(6) 제10조(처벌규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문서와 물건을 개인적으로 취거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명 II

## 전관예우 논란

수원지법 형사 5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월 9일 도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의회 유재언의장(56세, 민자)등 4명의 도의원에 대해 ‘이미 석방된 4명의 도의원과 인신구속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비리로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던 이 사건이 공판과정에서 다시 관심을 끄는 것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기 위해 법원이 특별재판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개업한 전직 부장관·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의원들의 변호를 맡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수원지법 항소1부장판사를 끝으로 수원에서 개업한 이재철 변호사, 8월에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퇴임한 김사일 변호사와 2월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마친후 개업한 조명원 변호사가 수뢰혐의 도의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에 대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법관직에서 퇴직한지 1년 이내인 변호사가 최종근무 법원의 1·2심 형사사건을 수임했을 경우에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관예우 균절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6월 말에 퇴임한 이재철 변호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검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가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판결의 형평성, 적정성에 대한 시비를 줄이고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법조관행을 고치기 위해 모처럼 마련한 특별재판부 구성의 취지가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간부출신 변호사들의 도의원 수뢰혐의 사건 변호로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의견을 냈으며 지방의원 비리로 사회적 관심을 끄는 도의원 수뢰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은 전관예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설사 전관경력이 보석허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검찰·법원 간부출신 변호사들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과 후배법관들의 부담을 감안해서라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스스로 자제하는 신중함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사무장의 눈으로 본 사법현실

·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 대한 설문조사 ·

이 설문은 1995년 11월 10일~20일 업을 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30명의 사무장을 일대일 대면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올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법개혁의 논의에서 계속 소외되어 왔으면서도 사법 현장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무장의 눈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현실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 이 설문의 취지였다.

설문 과정을 통해 우선 확인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공통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일반 사무원과 구별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력 3년 이하의 사무장에서부터, 수십년 된 경력을 통해 수많은 사무원과 사무장을 거느리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일률적으로 한 범주로 묶기 어려운 여러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법조인과 일반인의 어느 곳에도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한 독특한 동질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처우에 대해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70%가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법률 서비스의 형태가 사안이나 전문성에 따른 집단 협력의 체제라기 보다는 주로 개인사무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사무원 생활을 포함하여 사무장 경력의 '3년 이하'에 26%, '5년 이하' 35%에 응답함으로써, 5년 미만의 경력자가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사무장들은 자신들의 처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항목에는 단 한사람도 응답자가 없는 반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48%에 달하였다. 국가기관인 법원, 검찰 직원들의 처우문제 등에 대해서 공동의 노력과 일괄적인 개선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장의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 처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현재에도 친목 성향의 사무원 조직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의 진행과 처우가 각자의 사무실 단위로 되어 있어 고립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처우의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조직하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뿌리깊은 관행, '급행료'**

다음으로는 음성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과 검찰 직원의 급행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다. 급행료란 법조 관련 행정직원들이 문서 접수 및 업무진행 과정에서 거래되는 뒷돈을 말하는데 그 액수가 아직까지는 소소한 차원이기는 하되, 그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법원·검찰직원이 '급행료를 항상 요구한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24%, '대체로 요구한다'에 24%, '요구 당한 경험 있다'에 24%로 결과적으로 72%의 사무장이 최소한 급행료를 요구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더구나 요구를 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응답자의 62%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낸다'고 대답함으로써(표2) 급행료의 관행이 법조 행정업무에서는 일종의 상식으로까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급행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당하는 불이익은 76%의 응답자가 업무가 지연된다고 말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생명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실정에서 불이익에 대한 압박감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렇게 지불된 급행료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법원·검찰 직원만의 개인적 거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7%가 급행료를 사무실에서 공적으로 계상처리된다고 응답하고 34%의 응답자가 급행료의 일부가 공금으로 계상된다고 대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대부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3). 이러한 급행료에 대해 사무장들은 응답자의 21%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절대다수 68%의 응답자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해결책으로는 50%가 '법조인들의 공동노력'을, 45%는 '법원 검찰직원의 처우개선'을 꼽은 반면, '비리적 결정의 사정활동'에는 단 5%만이 동의해서 정치권의 칼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반대하였다.

다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와 수입료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사건의 양은 대체로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수입료 또한 일반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무장들은 응답자의 76%가 '적당하다'고 대답해, 변호사 사무실내에서는 변호사와 사무원이 일정하게 같은 이해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 당사자재판의 길은 아직 요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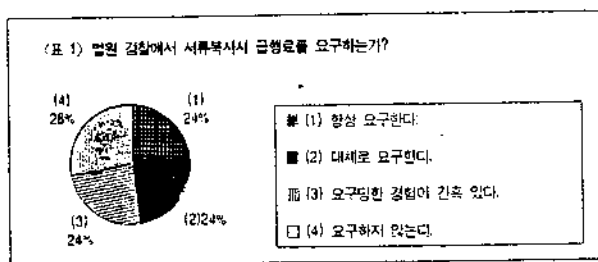
다음은 소송제도를 포함하여 법원·검찰의 행정 처리과

정과 당사자재판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70%의 응답자가 '필요한 절차'라고 대답하여 사법관련 행정의 복잡한 현실을 수긍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당사자재판에 관해서도 그 가능성이 확대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법을 관련 일이 일반인이 하기에는 본질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2%를 넘어서고 있어 아직도 법률 관련 업무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까다로운 행정처리로는 80%가 '정확확인 절차'를 들고 있어 법원·검찰의 업무진행이 민원인 중심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내부 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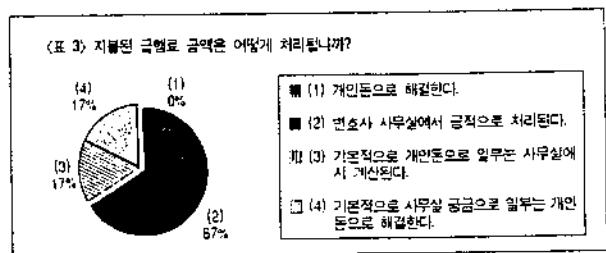
사법개혁의 논의가 일반국민의 참여 여지가 보장되지 않은 채 법조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장 또한 일종의 소외자와 국외자의 처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3%의 응답자가 '사법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39%의 응답자는 사법개혁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라고 생각하여, 사무장들의 대부분이 사법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법조인을 존경한다'는 응답자는 4%에 불과하여 법조인에 대한 신뢰 역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렇듯 사법현실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는 대조적으로 사법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에 응답자의 61%가 '심정적 동의'를 표했으며 26%에 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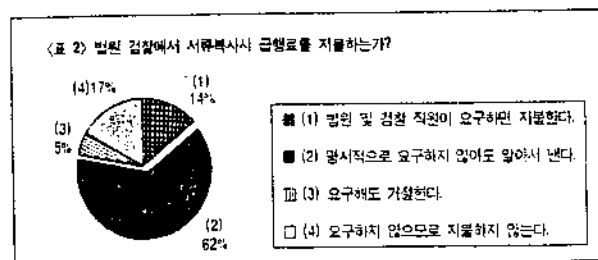
〈표 1〉 법원 검찰에서 서류복사시 급행료를 요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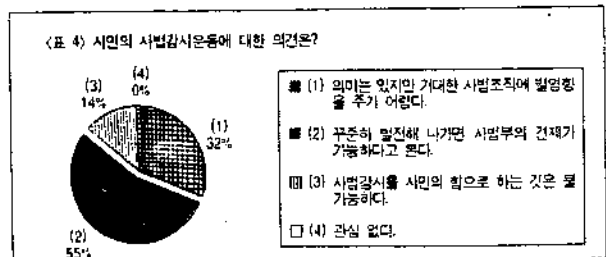
〈표 3〉 지불된 급행료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



〈표 2〉 법원 검찰에서 서류복사시 급행료를 지불하는가?



〈표 4〉 시민의 사법감시운동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가 이런 활동에 '직접 참가하고 싶다'고 대답하여 사무장들이 법조인의 단순한 보조자로 남지 않고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 참조).

### 존경받는 법조인, 참여하는 사무장을 위하여

또한 32%의 응답자가 거대한 사법조직이 '변화하기 어렵다'고 대답한 반면 55%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는 하되 진취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사무장들은 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판예우, 업무과다, 안이한 사전처리들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검찰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인 자세, 권력의 시녀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경찰은 역시 권위주의, 그리고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수사과정을 주요문제로 들었다. 변호사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변론, 일부변호사의 사건 브로커와의 결탁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열악한 처우, 과다한 업무, 불합리한 관행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고, 사법정의를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자로서 사무장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다면 충분히 사법정의를 한 축으로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현행 법규만이라도 모두가 성실히 지킨다면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리라는 한 사무장의 말처럼 사법정의를 향한 소박하나마 현실적이고 당당한 주체로 사무장들이 서기를 기대해 본다.

### 회원모집안내

"사법, 이대로는 안된다"고 느끼십니까?  
"사법을 제자리에 놓아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신간 도서 안내

### 교육과학사

서울시 마포구 아현1동 424-31호  
전화 : (02)363-6431~3, 팩스 : (02)393-4366

### 법과 정치

金哲洙 著(서울대 교수)  
A5新版/854면 / 값 21,000원

제1장 입헌주의와 정치주의  
제2장 통치절서  
제3장 사법과 헌법재판  
제4장 한국통일과 독일통일 (‘95년 12월 초판 발행)

###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

수센 에스트리치 저

-법은 여성을 어떻게 차별하는가? 李榮蘭 역(숙명여대 교수)  
A5신판/244면/값 7,000원

이 책은 교육과학사의 <법학교양총서> 중 38번 "진짜 강간(Real Rape)"을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책명 및 체제를 변경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인 수센 에스트리치 교수는 하버드 법대 교수시절에 이 책을 썼는데, 대답하게도 자신이 실제로 강간 당했던 사실을 기술하고 이를 기초로 강간죄가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특히 수사과정, 기소여부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비판적 시각에서 논하였다. (‘95년 2월 초판 발행)

### 법과 문학

장경화 저(경원대 대우교수)  
-소포클레스에서 카뮈까지- A5신판/432면 / 값 9,000원

이 책의 목적은 문학작품 속에서 법적인 측면을 적출하는데 있다. 최근 각 법과대학에서 개설된 "법과 문학"의 강좌에 교재로 활용하고 일반인에게는 교양서적으로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95년 10월 초판 발행)

###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

김재문 편저(동국대 교수)  
-기본법판- A5신판/508면/값 10,000원

이 책은 한국고전 50여종과 중국고전 180여종에서 인용되고, 우리 민족의 지혜가 들어있는 전통속담 2만여개를 200여장의 사진(그림)과 함께, 55종류의 법분야 및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다. (‘95년 5월 초판 발행)

### 국제분쟁과 해결방법

J. G. Merrills 저  
김재원 역(서원대 교수)  
근간

이 책은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2d Edition, 1991 : 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국제적 분쟁해결에 관한 각종 국제법규는 물론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여,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가진 책으로 널리 읽히고 있는 책이다.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빈발하고 있는 국가간의 분쟁을 가능한한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시에는 효과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국제적 절차 및 관행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 단체협약상의 인사(해고)조항의 형해화

**노**동조합과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사협의조항 또는 인사협의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인사조항은 인사에 대한 경영의 전제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어떠한 형태에 의하든 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노사간의 일정한 rule을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용자가 조합원인 종업원을 해고함에 있어서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던가(해고동의조항) 또는 조합과 협의할 것을 거쳐야 한다는(해고협의조항)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 경영의 전제적 지배

해고동의조항은 노동조합의 동의에 의해 당사자간의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해고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에 대하여 해고협의조항은 반드시 합의점에 도달하여야 하지는 않지만 회사측에서 해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노동조합에 납득시키고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최근의 몇몇 판례를 보면 이러한 인사조항의 절차적 의미를 무시하거나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우선 판례는 다음과 같이 노사간의 해고동의의 약정과 해고협의의 약정에 관해 그 법적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대법원 1992. 6.9 선고 91다 41477판결 등):

“사전협의는.....회사의 징계권을 포함한 인사권을 전반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회사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승인 또는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회사의 인사권 행사를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경우와는 달라.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회사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징계를 포함한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 임원 등에 대한 징계해고가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해고협의조항은 있으나마나

요컨대 법원은 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조항을 구분하여,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해고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유효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고의 효력에 관한 한 해고협의조항은 있으나 마나 한 단순한 예문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점은 대부분의 학설이 해고동의조항인지 또는 해고협의조항인지를 불문하고 이러한 인사약정을 무시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적법절차 내지 선의칙위반을 이유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대비된다.

법원의 입장은 단체협약상의 인사조항이 갖는 절차적 의미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 또는 노동조합의 관여의 정도에 있어서는 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조항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차이로 인해 협의조항에 내포되어 있는 절차적 정의, 또는 적법절차(due process)의 요청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협의조항이 존재함으로써 근로자 측에서 갖게 되는 적정한 인사조치에 대한 기대는 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정의가 중시되고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실체법적 효과를 부정하는 예는 다른 법현상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더구나 단체교섭 또는 그 결과물로서의 단체협약은 단순히 권리의 준부의 문제를 판가름하는 기능 외에도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를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노사가 설정하려고 하는 질서의 존중을 통하여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이 산업평화의 유지를 담보하는 안전판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면, 다른 법영역에서 보다는 노사 상호간의 신뢰와 이에 기초한 절차적·제도적 약정은 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약정을 깨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단순히 '동의'와 '협의'의 사전적인 의미에 집착한 나머지 단체교섭제도 전체와의 맥락 속에서 그 절차적 의미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인사조항의 절차적 의의 몰각 우려

또한 취업규칙상의 인사절차규정(그것이 협의조항이든 합의조항이든 불문하고)에 대하여 이를 '정위가 요구하는 유효요건'이라고 판시한(대법원 1979. 1.30. 78다304판결) 중전의 입장파도 상존된다. 단체협약을 취업규칙에 우선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97조의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노사 양당사자의 의사에 매개된 단체협약조항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조항보다 존중되어야 함은(규범적 서열) 다언을 요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제한의 정도 또는 노동조합의 관여의 정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상의 인사협의조항을 해고의 유효요건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은 위의 취업규칙상의 인사협의조항과 비교해볼 때, 전도된 결과를 초래케 하는 자체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한 대법원 판결에서(대법원 1994.3.22 93다28553판결), 단체협약상의 해고동의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 및 용례에 비추어 '동의'는 '협의'의 의미를 지닐 뿐이라는 해석을 한 후 결국 조합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해고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사조항의 절차적 의미가 더욱더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상의 약정을 의사해석문제로 환원시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해고협의조항을 규범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려는 색다른 해석론을 동원하고 있는 바, 의사해석의 타당성과 현실적합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협의조항이 법규범적으로 무용하다는 점에 착안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발상법은 떠올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철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단명Ⅲ

## 의붓딸 성폭행 공소기각 석방논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10월 20일 의붓딸(13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여 성폭력 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조모(43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달리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조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처벌대상을 4촌이내의 혈족으로 제한한 만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은 혈연관계에 의한 존속가운데 혼외출산등으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재혼등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존속관계는 처벌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의붓아버지인 조씨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성폭력특별법 7조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소제기전에 고소를 취소해 친고죄인 강간죄로도 처벌할 수 없어 공소기각 석방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성폭력 특별법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나머지 살인까지 한 김보은양 사건이 계기가 되어 친고죄인 성폭력범죄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해 기존 형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정하였으며, 법규의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은 의붓아버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형벌법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며 피고인에 불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분명한 규정형식이나 모호한 내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것이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산위에서 여성의 권리실현을 도모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라면 사형?

- 한국의 형사사법현실과 관련하여 다시 본 O.J.심슨 재판 -

지난 10월 3일 흑인 풋볼 영웅 O. J. 심슨이 자신의 백인 전처와 그녀의 남자친구 유테게 백인을 살해하였다는 검찰의 "1급 살인" 및 "2급살인" 혐의의 기소에 대하여, 9명의 흑인, 2명의 백인, 1명의 히스패닉으로 구성된 배심원단(the jury)은 전원일치로 'Not Guilty'를 평결(Verdict)하였다. 검찰측은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 D.N.A 구성, 사건시간내에 있어서의 심슨의 소재불명, 그리고 심슨의 배우자폭행의 전력 등을 중심으로 논지를 펴나갔지만 변호인측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의 악명높은 인권유린 역사, LAPD 법의학연구실의 문제점, 마크 퍼만 형사의 위증 등을 중심으로 반격을 가하였고, 최후변론에서는 법의 논리를 뛰어넘어 이른바 '인종주의 카드'를 배심원들에게 던짐으로써 재판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다. "O.J.심슨 재판"(O. J. Trial)은 미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인 극심한 인종간 갈등, 만연한 가정내 폭력, 개선되지 못한 경찰관과 인권의식 등을 다시한번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평결 이후 미국 전역은 이 재판에 대한 평가와 대책과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의 도가니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인종갈등의 문제는 이 평결이후 10월 16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일백만 흑인 남성대행진'과 맞물려

더욱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글에서는 현재 미국 사회에서 논쟁점이 아니라, 한국 형사사법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무엇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어떤 외국의 법현실도 결국은 우리의 법현실을 반추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 고교 미졸업자가 유무죄를 판단하다니?

먼저 영미식 배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배심원들은 법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미졸업자도 여러명이나 된다. 이러한 구성은 "O.J.심슨 재판"의 경우 뿐만 아니라 미국 형사재판에서의 통상적인 배심원 구성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대 시민 혁명의 성과인 배심제를 공개적으로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암묵적으로는 '무식한 시장잡배'들에 의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고교 미졸업자가 감히 유무죄를 판단하다니?? 현재의 살인적인 경쟁을 뚫고 사

법고서를 함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그 수준에 문제가 많다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법조계의 시각이 아닌가? 물론 영미법계에서도 배심제에 대한 비판이 있으며, 이 배심제를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직수입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수백년간 내려온 평민에 의한 재판의 의미를 생각해보다면, 현재 법조개혁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논쟁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재판의 텔레비전 중계?

"O.J.심슨 재판"은 재판 개시부터 평결에 이르기까지 텔레비전 생중계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는 '재판이 쇼로 변질하였다' 또는 언론이 재판을 오도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이 재판은 O.J.심슨이라는 유명인사를 둘러싼 센세이션널한 사건이다 보니 재판자체가 하나의 '싸구려 연속극(Soap Opera)' 같은 느낌을 주었고, 또 언론도 파다한 취재경쟁으로 빈축을 샀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러한 비판 속에서도 재판생중계를 금지하자는 발상은 나오지 않

있다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올 수 없었다. 그러한 발상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이토 판사가 몇번에 걸쳐 중계 정지명령을 내리고 방송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중계 자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번의 "O.J.심슨 재판" 외에도 항상 주요 재판을 상시적으로 중계하는 채널이다. 그래서 일반 시민은 안방에 앉아서 재판진행과정을 지켜볼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석 등을 들으면서 당해 재판에서 판사, 검사, 변호인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 이외에도 의회 및 행정부의 주요 회의 및 각종 청문회 등을 상시중계하는 채널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일반시민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활동을 안방에서 생생하게 알 수 있고, 또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O.J.심슨 재판"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법조개혁의 내용으로 주요재판의 중계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본다.

###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는 정도로?” (Beyond Reasonable Doubt?)

한국의 모든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주요원리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검사가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을 부담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증명에 불충분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측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것이다. "O.J.심슨 재판"은 바로 이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영미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찰측이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는 '정도로'(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다.

O.J.심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필자는 주위의 여러 한국인이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O.J.심슨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유죄이고 사형이 아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 그러한 예단이 현실성을

갖는 한국 형사재판을 우월한 것으로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이 때 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Beyond Reasonable Doubt)"을 질문자에게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2명의 백인 배심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아니스 아센바크라는 62세의 할머니는 10월 18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심슨이 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심슨이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무죄평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유일한 히스패닉 배심원이었던 데이빗 알대나도 같은 날 LA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심슨이 범인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각종 증거와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심슨이 두 사람을 살해한 범인으로 생각되지 않아 무죄평결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O.J.심슨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에만 경도되어 있는



동안, 위의 두 비법률가 미국 시민은 형사소송법의 또다른 요소를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 양복입은 O.J.심슨?

한편 "O.J.심슨 재판"의 장면을 시청한 우리나라 사람들 중 O.J.심슨이 항상 양복을 입고 법정에서 출정해 있음을 포착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는 당연히 수의를 입게 되어 있지만, 법정에 출석할 때만큼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또다른 표현이다. 법정에 출석할 때 수의를 입고 고무신 신고 심지어 포승까지 차고 앉아 있는 한국의 피고인의 모습과 비교해보자. 그런 피고인을 보고 "무죄추정"이 생기겠는가. 아니면 "유죄추정"이 생기겠는가? 감옥행정의 편리함이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보다 우월한 위치에 선다면 이를 어찌 '법치국'

가라' 하겠는가? 한국 사회의 인권수준은 피고인의 복장에서조차 엿볼수 있는 것이다.

“O.J.심슨 재판”에서 O.J.심슨이 미국 사회의 보통의 흑인에 비해, 아니 보통백인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법적 지원을 받았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 형사재판이 너무 피고인쪽으로 경도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비판이 미국의 보수파로부터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평균적’ 또는 ‘제도적’ 보장수준을 비교해 볼 때도, 우리의 수준은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수인의 권리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수업의 연장선에서 그 유명한 샌퀸틴 감옥 (San Quentin Prison) 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속에서 필자는 수인의 방마다 텔레비전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여러 이론적인 논리 이전에 그 텔레비전 하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검사가 ‘미란다 (Miranda)’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요청한 영장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일부 법원이 우범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그 증거를 배제하였다는 뉴스를 멀리서나마 듣는 것은 형사법 전공자로서는 무척 기쁜 일임을 밝히고 싶다.

### D.N.A 전문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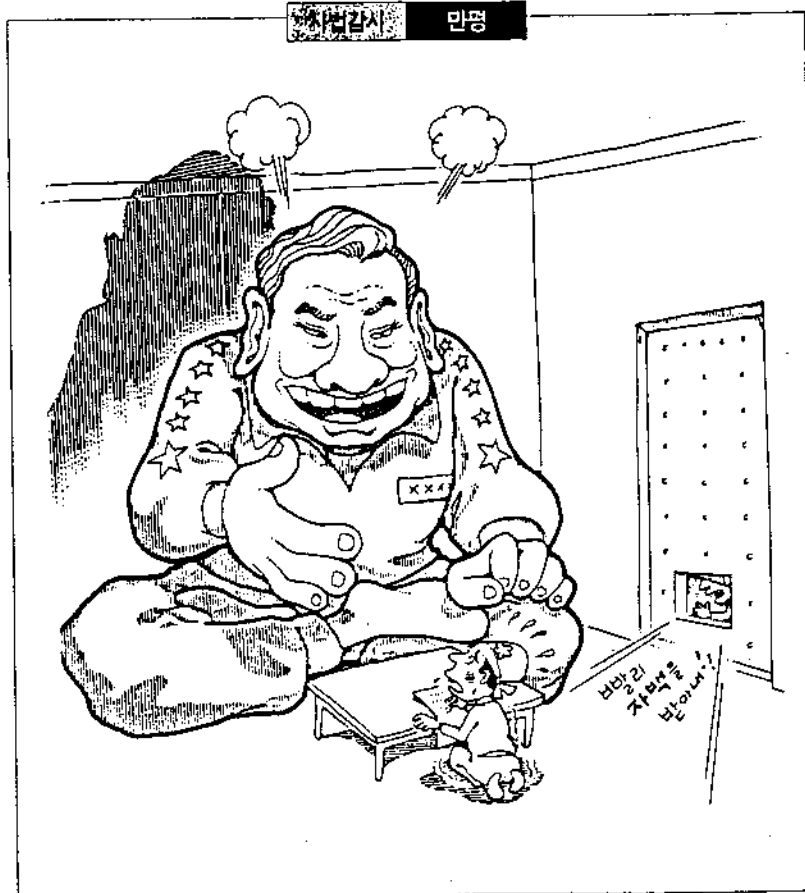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O.J.심슨 재판”의 핵심 쟁점중의 하나인 D.N.A에 대해 말해 보기로 하자. 검찰측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혈액에서 추출된 D.N.A구성이 O.J.심슨의 D.N.A 구성과 일치함을 증명하려 하였고, 반대로 피고인측은 이에 맞서 그 혈액이 ‘인종차별주의자 (Racist)’ 형사 퍼만(Mark Fuhrman)에

의해 조작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LAPD 법의학 연구실의 관리소홀로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당연히 양측의 전영에는 D.N.A 문제에 정통한 법률가를 배치하였음은 물론이다. 많은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가 지... 법의학자들을 대상으로 신문, 반대신문이 계속되고 상대의 약점을 파헤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법률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학분야 전문 법률가가 가능하게 된 것은 미국의 법학교육제도 때문이다. 미국 Law School 학생들은 다양한 학부 전공을 가지고 있다. 필자와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중에는 문과쪽 박사는 물론이고, 의사도 있고 이과 전공박사도 있다. 그리고 필자가 다니는 버클리 Law School의 저명한

환경법 교수는 화학과 박사 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식 Law School 도입 및 사법시험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 귀결이 현행 학부제 법학교육의 보완이 되든, 아니면 미국식 전문법과대학원의 도입이 되든 간에 그 내용에 위와 같은 전문가 법률가를 키워낼 수 있는 개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들이 배출되어 사회의 다양한 계급, 계층을 대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법적 토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또하나의 방도가 아닐까?

[조국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법과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사법감시만명은 '저작권법'의 주인공이신 서대원님이 직접 채워주시는 소중한 란입니다.

## 내가 겪은 법의 현실

**지**난 해 10월 6일 나는 소위 '북한 장학금 교수' 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 언론, 그 거대한 공룡과의 싸움

우선 국가안전기획부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긴급 구속을 집행한 것, 밤 11시에 6~7명의 수사관이 불쑥 들어닥쳐, 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도 없이, 30분간 집을 수색한 것 등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사회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국가가 이렇게까지 하여 자신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나를 생각하면 나는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안전기획부에 못지않게 나를 분노케 한 것은 언론의 태도였다. '북한 장학금을 받은 교수'가 있다는 오보를 5대 일간지가 1면 내지 사회면 톱기사로, 3개 방송사가 8·9시 뉴스에서 다루었으나, 이에 대한 정정보도는 다루지 않았다. 두 개의 신문을 제외한 대다수의 매체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힘의 교수들은 일단 귀가 조치를 하였다'는 보도만을 내보냈다. 분노한 나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해보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론의 황포를 개탄하면서도, 그 거대한 공룡과의 싸움은 자제하라는 충고를 하였다. 이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론과

의 고독한 싸움을 시작하였다. 우선 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었다. 개인적인 통로를 통해 정정을 요구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언론들은 내가 변호사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나타나자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어쨌든 처음 보도된 기사의 크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으나, 대다수의 신문들은 정정보도를 내보내었다. 나는 정정을 거부하는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권 재판을 시작하였다. 1심에서 내가 승소하자, 두 방송은 판결에 따라 뉴스 칠판머리에 정정보도를 내보내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겪었던 시달림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이다. 어쨌든 이 사건은 방송이 국가보안법 관계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보낸 거의 최초의 사건인 듯하다. 그후 한국방송공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항소심부터는 소송 대리인의 도움 없이 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 정정보도 청구 따로, 손해배상 소송 따로

1년간의 이런 경험들로 나는 많이 똑똑(?)해졌다. 다시 말하면 이는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법이 서민들을 보호하기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고, 그리고 법적 관행에 분노하면서 자신의 권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여기에서 내가 느낀 사법제도나 그 관행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첫째로, 정정보도청구권 재판의 경우, 피해자가 승소할 경우에 언론사측이 재판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면서부터 소송 대리인의 도움을 받았다.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전문지식을 요하는 이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는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비용문제가 생긴다. 물론 1심에 승소하자, 재판부는 언론사에 재판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실제로 든 변호사 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재판비용을 찾기 위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정정보도청구권 재판보다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재판도 까다로워서 피해자들은 망설이게 된다.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직업을 가진 나 역시 시간 문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기한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부터 변호사 비용이나 중재신청에 든 실질적 비용을 언론사측이 부담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사법부, 언론사 그리고 피해자 모두가 쓸모 없는 힘의 낭비를 줄이고 재판에 드는 엄청난 변호사비용 때문에 서민이 법의 정의로부터 소외되는 현실을 막는 길이다. 나의 경우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덕택에 소송비용의 많은 부분을 경감할 수 있

어서,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법률보험의 필요성

전문학적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법률 보험의 도입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독일의 경우, 대다수의 중산층 가정들은 법률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개인의 세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발달한 나라인 탓인지, 소송비용 자체를 보험이 부담해주는 제도가 잘 발달하였다. 개인에 못지않게 학교나 각 단체들도 거의 이런 법률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흥미 있는 사실을 한가지 소개하자. 최근 독일에서는 10여년이 넘게 여진히 학위를 못 끝내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독일 정부가 채류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내가 아는 한국학생중에도 이 때문에 2-3천 만원씩 드는 재판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학생회가 법률보험을 들고 있는 까닭에 이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가난한 제3세계 학생들은 꿈쩍없이 추방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둘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법계에서의 여러 관행들이 좀 더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하는 바램이다. 재판과정에서 법관들의 고압적인 분위기도 서민들을 질리게 하려니와, 소송 대리인과의 관계 역시도 좀 더 민주화되었으면 좋겠다. 기존의 판례나 법률 관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도 어렵다. '전문가'라는 특권 아래 의뢰인의 희망사항은 아예 도외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민주화로 가는 긴 과정이라면,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민주화 역시도 우리가 점점 관심을 넓혀가야 할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실질적 지식의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안전기획부로의 연행 과정에서 서부터 법률 지식의 부재로 인해, 나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는 꼴'이었다. 우리의 교육과정이 법률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주지 못하더라도, 법률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를 가르쳐 주었어야 하였다. 또한 사법부는 서민이 쉽게 법조문이나 판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간행물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나도 판례 수집과 관련하여 컴퓨터 데이터를 뒤져보았으나,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이미 언급한 이런 저런 관행들이 개선되어야, '법의 정의'라는 것이 서민들에게 비로소 현실감을 갖게 될 것이다.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사회과 교수]

#### 단명Ⅳ

.....

### 5·18위증도 '공소권없음'

5·18 내란 관련자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법적판단을 했던 검찰이 5·18위증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정진규)는 89년 5공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민변에 의해 고발된 전두환씨 등 7명에 대해 10월 25일 국회위증은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증언 감정법상 위증죄를 친고죄로 보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근거로 대법원 판례,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 절차규정, 국회의 회기불계속 원칙, 국회자유권 등을 들고 있으나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첫째, 5·18 위증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법률검토작업 과정을 보면, 5·18 내란죄의 불기소 결정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자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위증관련 피고발인들을 기소하여 국민의 분노를 달래보고자 시작하였으며, 민자당의 '정치적 반대논리에 밀려 '친고죄'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둘째, 법이론적으로 볼때에도 친고죄의 명문규정이 없는 국회위증은 국회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친고죄로 본다면, 다수당이 원하지 않는 위증고발은 있을 수 없게 되어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국회위증은 국민전체에 대한 범죄로서 형법상 위증죄에 비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기소권이 제한될 수는 없다.

셋째, 내란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한 헌법파괴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에서 국민에 대하여 다시 위증의 죄를 범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검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5·18관련사건에 대해 거듭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의 태도에 분노하며, 국회는 법률상의 무사한 위증고발을 이행하여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번복시켜야 할 것이다.

## 법정에서의 법관의 말투

**형**사법정은 무색투명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은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는 결코 개인의 사적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물론 변호사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하여 변론하면서 법관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대상은 단지 피고인일 뿐이지 그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갖는 지위나 학식, 재산의 정도, 사상적 편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법정은 무색투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당연히 우리 법원도 사회적 지위와 차이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여서인지 피고인의 사회적 호칭으로 그 피고인을 부르는 것을 제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호칭 이외의 많은 말이 오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진술을 거부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구 . . . .”

얼마전 어느 형사법정에서 경험한 일이다. 그 날의 재판은 소위 시국재판이라고 하여 별도의 특별기일까지 잡아서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은 주사파로 분류되는 학생들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어 재판장은 우선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 ‘진술거부권고지’는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고도 불리는 피고인의 권리를 재판장이 재판의 모두(시작)단계에서 미리 밝혀 줌으로써 피고인이 자기 자신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게 하고, 이로써 인권보장 및 재판의 평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의 진술 거부권의 고지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라는 것이 있는데 진술을 거부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구 . . . .”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식의 고지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위 말이 피고인들의 사상적 편향 즉 주사파라는 점에 대하여 재판장이 갖는 뿌리깊은 편견에 기인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불편하였다. 또 위 말은 위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조금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형사소송법에서 주라고 하니 마지못해서 주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갖는 감정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이 법정에서 법관의 말이나 표정으로 드러난다면 피고인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정에서 법관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실어 말하게 되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언어폭력보다 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변호사라면 누구나 형사건 민사건 법정에서 재판장이 재판진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민사재판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변호사인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되는 내용인 경우가 많다. 재판장 중에는 그러한 짜증나는 순간에도 이성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정중한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순간 그 전에 잘 써 오던 정중한 표현을 하대하는 듯한 말투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판진행에 있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하대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표현을 정중하게 하는 접미어인 “-요”의 발음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흐려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은 공적인 자리

법관이 법정에서 재판당사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것은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적으로 부여된 절차 속에서의 만남인 것이다. 그 공적으로 부여된 절차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법관의 말투가 어떠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법률 속에는 전혀 없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법관은 위와 같은 공적인 만남에 있어서는 일상관계의 사적인 형태의 만남의 연장이라는 착각을 탈피하여야 한다. 재판은 엄정하여야 하고 재판의 당사자는 완전한 인격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법관은 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의 설 자리조차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한정화 변호사]

## 무죄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나의 사법피해

저 박경자는 서울지방검찰청 박장수 검사(현 광주지방검찰청 근무)와 박병배 검사(현 제주지방검찰청 근무)의 부정 편파 수사에 의하여 인생을 망쳐버린 힘없고 가난한 오십대의 가정주부입니다. 이 통분하고 억울한 심정에 대하여서는 죽음으로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만 이대로 사라져 가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이제 남은 여생 이나마 부패한 검찰의 실상을 알리는 나의 억울했던 옥살이를 소설로 집필하면서, 이제 상처나 슬픔을 영원히 남길 이런 사

건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약한 서민으로서 엄청나게 거대한 힘과 권력의 덩어리인 검찰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라는 사실도 잘 알게 되었지만 전직 대통령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갈수 있다는, 이번의 비자금 사건 이후 그래도 검찰이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법의 형평에 돌아옴을 눈물겹게 감사하며, 아직은 나도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제 사건의 전모를 간략히 기술하겠습니다.

수사협조가 졸지에 감옥으로 직행하는 길이 될 줄이야 저 박경자는 전 대학교수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6월 18일 한성숙의 허위고소 사실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차 시정 수사과에서 협조 진술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기 위하여 잠깐 그곳에 협조차 들렀던 것이 아무 명문도 모르는 채 구속이 되었고, 일평생 나에게서 잊을 수 없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이라는 생소하고 희한한 죄목을 달고 3년6월의 징역에 처해야 된다는 악질범죄가 되어 노태우 전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검찰에서의 헛된 무죄주장

절망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사법감시」는 사법피해자들의 호소문인 「나의 사법피해 사례」를 이번 호부터 원문 그대로를 계속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이란을 통해 「사법감시」에 사법현실을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한다.

갔다가 졸지에 구속이 되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 구속지시를 내린 박장수검사의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박장수 검사는 나를 보자 "너 박경자, 김용자의 돈 1억 8천만원 썼지?"하고 무고한 허위죄목으로 구속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엉뚱하게 새로운 사건을 들춰냈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돈을 그것도 1억8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차용증 한 장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쓰지 않았느냐 다그치는 검사의 머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

었습니다. 화가 치민 나는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알 수 있는 이 사건을 그 좋은 머리로 나를 죄인으로 잡아넣은 근거가 무어냐. 정작 수갑을 차야 할 저 갑부 두 여자의 손에 채워져야 할 수갑이 내 손목에 채워진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는 거짓말탐자기를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좀 밝혀 달라고 애원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장수 검사는 "사기꾼이 무슨 말이 많느냐, 저 여자 미치지 않았느냐 저 여자를 끌어내라"하여 비등거리는 저를 검사실에서 끌어내며 "재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1심 재판중 무죄자임을 확증한 서울지법 2단독 이준범 판사가 금보석 허가로 100일 만에 죄수복을 벗고 풀려나던날 박장수 검사실로 다시 가서 나의 사기죄목이 어떤 근거로 입증되어 기소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제벌 Y전선의 김용자가 제출한 박경자의 1억 8천만원 고발의 근거서류를 보여달라고 따지자 박장수 검사는 김용자의 고발장은 폐기처분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양심에 비추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은 보나마나 무죄이며 죄를 짓지 아니한 나에게 판사가 어떠한 권한으로 죄를 주겠는가. 라고 말하며 박장수 검사에게 진짜 죄인은 허위고소자인 한성숙과 김용자이며, 본인의 재산을 갈취해 가려는 사기행각임을 설명하였고 (4억원의 재산이 구속중 일당인 김용자 수증으로 이전되어 버렸음) 1심의 무죄판결 이후에는 항소하지 않을 것만 약속한다면 검사도 사람인 이상 오판도 있을

수 있으니 나는 이번 사건을 잊고 조용히 살겠다고 말하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 법원에서 무죄를 확인받았지만 . . .

그러나 1심 무죄판결 이후 검찰은 다시 항소를 하였고 항소장 내용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항소장에 따르면 저는 여전히 사기꾼이었으며 30만원을 갈취해 간 변호사법위반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이 되었고 그 당시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나간 큰아들의 노력으로 사건전모는 쉽게 드러났습니다. 즉 제가 투자했던 약8억원의 수원 공장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Y건설의 김용자 여인의 소행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결국 구치소에서 고생하는 동안 저의 4억원이라는 돈이 모두 합법을 가장하여 김용자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박경자는 김용자를 곧바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3,4년전에 제가 당했던 변호사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김용자 또한 죄인으로서의 구속에 이르렀지만 어찌된 일인지 구치소에서 구속된 지 1주일도 못돼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나는 100일씩 아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진짜 죄를 많이 짓고도 용서를 받았던 그녀는 죄 지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도 부자라는 이유와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친하다는 이유 하나로 (김옥숙여사의 제일의 고객이라고 김용자는 말함) 그 모든 것을 회피해갈 수 있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큰 상처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구속 당시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무고하여 7,430여만 원을 갈취해 가려던 사기꾼 한성숙을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고소장을 접수한 당시 서울지검 박병배 검사는 과거에 저를 속결로 구속하던 것과는 전혀 판판으로 한성숙에 대한 조사 조차 해 주지를 않고 2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평풍송치를 하는 등 사건수사를 기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형찬과 저는 한성숙의 접근처에 3일간을 숨어서 잠복근무하며 세 차례나 검찰에 신병을 인수하였으나 웬일인지 곧바로 풀려나온 뒤 심지어는 출국금지시켜 놓고 조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던 본인의 애원은 아랑곳없이 바로 3일 후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종결이라고 처리하여 출국금지를 해지해 버렸던 것입니다. 출국금지 되어 있던 한성숙을 '수사종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도피시키는 등 갖은 행위를 다 하다가 결국은 한성숙이 미국으로가 조사할 수 없다며 기소중지를 하

여 그를 조사할 수 없다고 옹호하였습니다.

#### 아들 형찬이의 자살을 누가 돌이켜줄 수 있는가?

아들 지켜보며 밤잠을 자지 않고 억울함과 통분함에 몇 날을 지새우던 저의 목숨보다 귀중한 아들 형찬이는 썩어빠진 검찰과 사회의 유전무죄를 원망하며 스물 여덟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원통하고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그 동안 저는 청와대, 대검찰청 등 온갖 곳에 다 진정을 하였으나 난지도 쓰레기장보다도 더 썩어 있는 우리 나라 기관에서는 저의 억울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기 등으로 고소된 (94 형 제133341)한성숙이 일주일만에 돌아오겠다고 속여 출국금지를 풀고 도주해 버리자, 서둘러 기소중지를 다시 시켰고, 본인의 성화에 못 이겨 돌아온 연후에도 (4개월 후) 한성숙의 수사불응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지검 박찬홍 검사가 10여개월을 처리하지 않고 쥐고 있다가 김진태 검사에게 인계하여 서류함 깊은 곳에 집어넣어 두고 현재 조사할 기미도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5년 11월 13일 한성숙을 우연히 법원에서 만났는데 금력과 권력의 힘으로 다시 저를 구타함으로서 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기에 한성숙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한성숙은 구속되기는커녕 다시 또 막강한 고위층 간부의 힘 내지 검찰의 옹호로 당당하게 행동하여 경찰마저도 별별 뉘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법부재의 사건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문민정부라면 선량한 국민들의 기대는 어디에 걸어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직권을 남용하여 무죄인 세사람을 구속기소한 박장수 검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른 제주지검의 박병배 검사는 하루빨리 검찰인으로서의 잘못을 사과하고 물러서야 될 것입니다. (박경자)

「사법감시」의 각 란에 글을 게재하기 원하시거나, 그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의견, 반론 등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140-012 서울시 용신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

당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하이텔/천리안/나우콤 : PSPD